지역상생협력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4. 05.
개정 2022. 10.
개정 2023. 03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글로컬(Glocal)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협력 관련 산업체・학교기관・연구소・관공서・민간단체 등(이하 "산・학・연・관・민"이라 한다) 과의 긴밀한 협약을 통해 지역혁신과 지역발전 및 대학과 지역발전의 상생을 목적으로 우송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 지역상생협력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2.10.13.)

제2조(구성) ① 센터는 우송대학교 전체 학사조직에 속하는 교직원 및 학생으로 구성한다.

② 센터의 협력기관은 지역사회, 대전.충남 지방자치단체, 산업체, 연구소, 공공기관, 지역대학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대학과 지역의 "산・학・연・관・민"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교육・연구・봉사・나눔 활동
2. 지역혁신 및 지역의 특화 발전을 위한 학술적인 연구 활동
3. 학술강연회, 세미나, 연구발표회 등 개최 및 간행물 발간
4. 지역혁신 및 지역발전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
5. 대학의 학생선발, 교육과정 개발, 수업운영, 사회맞춤형 학생취업에 관한 사항 공동 참여
6. 지역사회 연계협력 유형의 개발 및 성과확산
7. 대학 및 지역사회의 특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
8. 지역사회 연계협력 인프라 확대
9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

제2장 조직 및 구성

제4조(조직) ①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과 실장을 두고,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의 기획.연구를 담당하는"기획연구부"와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추진 및 교육과 봉사를 위한 "교육봉사부",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을 위한 "지자체 협력부",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팀을 두며, 각 부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② 지역사회 연계협력과 관련된 재정지원사업 업무를 주관하고 관리 운영한다.

③ 평생교육원, 글로벌센터, 사회봉사단을 센터의 협력조직으로 한다. (개정 2022.10.13.)

④ 단과대학 및 각 학과는 지역사회 연계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최 하부조직으로 한다.

제5조(구성) ①센터에는 센터장, 부센터장, 실장과 각 부에 부장을 둔다. (개정 2023.03.08.)

② 센터장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직무는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.(개정 2023.03.08.)

③ 부센터장은 본 대학 교원 또는 외부인사로 하되,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3.03.08.)

④ 실장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부센터장을 보좌하고 부센터장 유고시 그

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3.03.08.)

⑤ 각 부와 센터의 부장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 업무의 소관 사항을 관장한다.

⑥ 센터에는 연구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상생협력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22.10.13.)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및 대학본부의 처장급으로 4인 및 협력기관에서 추천 받은 자 2인 이내로 하며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처장은 보직기간으로 하고, 그 외의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한다.

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주요사업의 계획 및 운영
2. 예산 및 결산 심의
3. 규정 개정 및 성과지표 달성에 관한사항
4.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5.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⑦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,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,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평가자문위원회

제7조(평가자문위원회) ① 센터의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평가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평가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, 학내위원 5인 이내, 외부전문가 2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평가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한다.

④ 평가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6조 ④항을 준용한다.

⑤ 평가자문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상시 및 종합 자체평가
2. 부진사항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조치를 위한 자문
3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자문

제5장 재정

제8조(재정) ① 센터의 재정은 센터운영비, 각종 보조금, 수탁 연구비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센터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.

제6장 보칙

제9조(운영세칙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되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